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0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25호)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2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8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7
1. 방통위의 공영방송 관련 선임권 삭제·변경(안 제12조)	7

I . 제안경위

【한민수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이훈기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김우영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서영교의원안】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민수의원안】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8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훈기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우영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영교의원안】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방통위의 공영방송 관련 선임권 변경·삭제(한민수·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12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제2호에서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어나 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임명권한을 변경·삭제하려고 함.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훈기의원안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	2. ----- -----임명 제청----- -----	2. (현행과 같음)	2. 감사 임명 및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	3. ----- -----이사 추천과 임명 및 감사 임명-----	3. -----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3. 감사 임명 및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한 방송문화진흥회

현 행	한민수의원안	이훈기의원안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4.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u>사장· 이사 및 감사</u> 의 임명에 관 한 사항	<삭 제>	4. ----- ----- <u>감사</u> ----- ----- --	4. ----- ----- <u>이사</u> <u>추천 및 감사</u> <u>의</u> ----- -----	<u>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u> 4. <u>감사 임명 및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한 한국교육방송공 사의 이사 추천 에 관한 사항</u>
5. ~ 29. (생 략)	5~29 (현행과 같음)	5~29 (현행과 같음)	5~29 (현행과 같음)	5~29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법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어나 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선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각 개정안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개정안의 개정추이에 맞추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